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974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를 규정한 시행령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경우 조례로써 평가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2제7항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7항제2호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 ⑥ (생략)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 (생략)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u>시·도지사가</u>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 (현행과 같음) 2. ----- ----- <u>시·도지사</u>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u>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3812